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 등록제 전환 안내

「관세법」 제222조의 개정으로 화물운송주선업(포워더)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신고업체는 2012.4.10까지 요건을 충족하여 통관지세관에 등록신청 하시기 바라며, 등록유예기간('12.4.25) 경과후에는 부호사용이 중지되어 혼재적하목록 제출이 불가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등록세관	○ 혼재적하목록을 주로 제출할 통관지세관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혼재적하목록 제출건수가 가장 많은 세관
등록요건	○ 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등록을 하였을 것 ○ 관세 및 국세 체납이 없을 것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 자본금 3억원(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 중에 있지 않을 것 ○ 전산설비(세관신고用)를 갖추고 있을 것
등록취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 관세 및 국세를 체납하고 이를 납부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 3회이상 업무정지 처분
업무정지	○ 관세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세관장 명령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시행일자	○ '11.11.30(기존 신고업체는 '12.4.25까지 등록완료)

※ 세부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의 뉴스/소식>관세청 공고(7번) 참조

※ 등록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주요 통관지세관(인천공항, 부산, 인천 등) 통관지원과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공항(032-722- 4128), 부산(051-620-6137), 인천(032-452-3213), 평택(031-8054-7073)

(별지 제1호 서식)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서

처리기한
10일

신규등록( ), 갱신( )

① 등록부호					② 통관지세관(코드)	
③ 신 청 자 업종구분	(해당란에 ○표 할 것) ⓐ복합운송주선업( ) ⓑ선박운송주선업( ) ⓒ항공기운송주선업( ) ⓓ보세운송업( )					
④ 화물운송주선업자명	(한글) (영문)					
⑤ 대표자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사업자등록번호	- -				⑧ 국 적	

⑨ 주 소	본 사			전화번호	☎
				(Fax번호)	Fax
	지점	1)		전화번호	☎
		2)		전화번호	☎
		3)		전화번호	☎
		4)		전화번호	☎
		5)		전화번호	☎

⑩ 등록번호(해당 업종 면허증 번호)	

「관세법」 제222조와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에 따라 위와 등록(갱신)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등록증 사본 2. 자산평가 증빙서류 3. 화물운송주선업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 4. 전산설비 보유내역 증빙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3. 국세납세증명서 ※ 위의 서류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임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시 유의사항

1. ① : 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를 영문 4자리로 기재하되, 이미 신고한 화물운송주선업자부호와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
2. ② : 적하목록 제출건수(해상, 항공 포함)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업무처리 세관을 기재
3. ③ ⓐ ~ ⓒ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운송주선업의 종류를 표기
   ⓓ :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등록 여부를 표기
4. ⑤~⑦ : 사업자등록증 등 참조
5. ⑧ : 화물운송주선업자 소속 국가명
6. ⑨ : 본사 및 국내 지점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
7. ⑩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운송주선업의 등록번호